



圖書館法施行令 改正

1965年 3月 26日 大統領令 第2086號로 公布된 圖書館法施行令中 一部 改正案이 지난 3月27日 大統領令 第2964號로 改正 公布되었다. 改正된 部分은 다음과 같다.

第4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の 資格은 正司書와 準司書로 한다.

〈改正前 條項〉

①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중 國·公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國·公共의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の 資格은 公務員任用令에 의하여 私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私立의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은 그 資格에 따라 이를 正司書와 準司書로 나눈다.

第8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8條(國立中央圖書館의 他圖書館에 대한 指導 援助)

國立中央圖書館은 法 第17條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他圖書館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指導 援助할 수 있다.

1. 圖書館의 管理 및 運營
2. 圖書館資料의 寄贈 및 相互貸借
3. 巡迴文庫의 運營
4. 印刷카드의 配付
5. 貴重한 文獻의 마이크로 複製와 配付
6. 其他 圖書館業務의 技術向上

附 則

- ① (施行日)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- ② (經過措置) 이 令 施行당시 國·公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國·公立의 學校圖書館에 勤務하는 司書職 公務員(司書業務에 從事하는 地方公務員을 포함한 다)은 이 令 施行日로 부터 一年以內에 文敎部長官이 定하는 銓衡을 거쳐 正司書 또는 準司書의 資格 證을 받을 수 있다.

〈改正된 附則 ②項은 1965年 3月 26日 公布된 圖書館法 施行令 附則 外에 新設된 條項임〉

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 開催

지난 4月 6日 第3回 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가 大邱市 立圖書館에서 開催되었다고 한다. 同會議에는 全國公 共圖書館長 및 貴賓 40餘名이 參席하여 會則改正과 圖 書館憲章採擇 및 市區郡單位 圖書館設置促進等 公共圖 書館의 當面한 問題를 眞摯하게 討議하였다고 한다.

釜山慶南地區協議會

任員을 改選

本協會 釜山慶南地區協議會에서는 1967年 4月8日 釜 山市立圖書館에서 60餘名의 會員과 來賓이 多數 參席 한 가운데 1967年度 定期總會가 開催되어 보다 効率의 인 協議會의 運營과 地域社會 圖書館發展의 길을 討議 하고 任員改選이 있었다고 한다.

이날 選出된 任員名單은 다음과 같다.

會 長 李完永(釜山大學校圖書館長)

專務理事 趙載厚(釜山市敎委獎學士)

河龍泰(慶南敎委獎學士)

理 事(釜山地區)

學校圖書館 朴泰臣(慶南高司書敎師)

金祈烈(이 사벨 中高校校監)

崔大林(慶南工高司書敎師)

大學圖書館 李珪範(釜山敎大圖書館長)

公共特殊 // 부중완(影島圖書館)

理 事(慶南地區)

東 部 地 區 趙弘濟(蔚山實高司書敎師)

中 部 地 區 文璣榮(馬山中司書敎師)

李恩斗(馬山高司書敎師)

西 部 地 區 崔明華(晉州高司書敎師)

문우연(晉州農大圖書館長)

監 事 李在九(東亞大學校圖書館司書)

金柄鉉(釜山女高司書敎師)

幹 事 이호연(釜山大學校圖書館司書)

張瑄鎭(慶南女中司書敎師)

1967年度 第6回 館種別 圖書館大會 計劃書를 個人 및 團體會員에게 發送하지 아니하오니 本報 (pp 34~35)를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